



외국의 세제

유럽국가들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제(I)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세제1담당

1. 벨기에

연방국가인 벨기에의 자동차 보유세는 州稅인 도로세(road tax)이다. 도로세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액을 기본세액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가세(surtax) 10%가 부과된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추가세액(taxe compensatoire des accises)을 더하여 과세하게 된다. 기본세액은 전년도 7월1일부터 과세연도 7월1일간의 자동차 가격변동을 감안한 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도로세는 주세이나 연방정부가 징세경비를 부담하여 세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추가세액은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 미니버스에 대해 부과되며, 차량이 5년이 경과되면 25% 감면된다.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미니버스의 세율 (세액단위 : BF)

1983년 7월1일부터 LPG에 대한 소비세의 폐지에 따라 LPG용 차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연간 부담액)이 부과되었다. 이들 차종에 대해서는 가격변동지수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단체의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 1~7 마력 : 3,600 BF
- 8~13 마력 : 6,000 BF
- 14 마력 이상 : 8,400 BF

2) 버스

버스도 마력을 기준으로 도로세가 과세되며, 가격변동지수도 적용된다. 영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의 부가세 10%가 부

가되지 않는다. 1999년 7월1일 현재 서울은 다음 표와 같다.

마력	취발유차	부가세(10%)	추가세액	경유차 서울
4마력 이하	2,076	2,284	984	3,268
5	2,064	2,864	1,224	4,088
6	3,768	4,145	1,776	5,921
7	4,908	5,399	2,304	7,703
8	6,072	6,676	2,856	9,535
9	7,236	7,960	3,408	11,368
10	8,388	9,227	3,936	13,163
11	10,884	11,972	5,112	17,084
12	13,368	14,705	6,288	20,993
13	15,864	17,450	11,184	28,634
14	18,360	20,196	17,256	37,452
15	20,856	22,942	19,608	42,550
16	27,312	30,043	25,680	55,723
17	33,768	37,145	31,800	68,945
18	40,236	44,260	37,824	82,084
19	46,680	51,348	43,896	95,244
20	53,148	58,463	49,992	108,455
20마력초과시 마력당 가산세액	+ 2.904	+ 3.194	+ 2.712	+ 5.906

※ 1 EURO = 40.3399 BF(벨기에 프랑)

버스 세율(단위: BF)

마력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마력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4	2,085	2,294	23	8,027	8,830
5~6	2,085	2,294	24	8,688	9,557
7	2,085	2,294	25	9,375	10,313
8	2,085	2,294	26	10,088	11,097
9	2,085	2,294	27	10,827	11,910
10	2,085	2,294	28	11,592	12,751
11	2,123	2,335	29	12,383	13,621
12	2,472	2,719	30	13,200	14,520
13	2,847	3,132	31	14,043	15,447
14	3,248	3,573	32	14,912	16,403
15	3,675	4,043	33	15,807	17,388
16	4,128	4,541	34	16,728	18,401
18	5,112	5,623	35	17,675	19,443
19	5,643	6,207	36	18,180	19,998
20	6,200	6,820	37	18,685	20,554
21	6,783	7,461	38	19,190	21,109
22	7,392	8,131	39	19,695	21,665
			40	20,200	22,220

3) 밴

밴(최대허용중량 3,500kg 이하)에 대한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밴의 세율(단위: BF)

최대허용 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500kg 이하	945	1,040
501 ~ 1,000	1,560	1,716
1,001 ~ 1,500	2,340	2,574
1,501 ~ 2,000	3,120	3,432
2,001 ~ 2,500	3,900	4,290
2,501 ~ 3,000	4,680	5,148
3,001 ~ 3,500	5,460	6,006

4) 트럭

트럭(최대허용 중량 3500kg 초과)에 대한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트럭의 세율(단위 : BF)

최대허용 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최대허용 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3,500~3,999	3,024	3,326	24,000~24,999	17,400	19,140
4,000~4,999	3,780	4,158	25,000~25,999	18,096	19,906
5,000~5,999	4,536	4,990	26,000~26,999	18,792	20,671
6,000~6,999	5,292	5,821	27,000~27,999	19,488	21,437
7,000~7,999	6,048	6,653	28,000~28,999	20,184	22,202
8,000~8,999	6,792	7,471	29,000~29,999	20,880	22,968
9,000~9,999	7,548	8,303	30,000~30,999	21,576	23,734
10,000~10,999	8,304	9,134	31,000~31,999	22,272	24,499
11,000~11,999	9,060	9,966	32,000~32,999	22,968	25,265
12,000~12,999	9,816	10,798	33,000~33,999	23,664	26,030
13,000~13,999	10,572	11,629	34,000~34,999	24,360	26,796
14,000~14,999	11,328	12,461	35,000~35,999	25,056	27,562
15,000~15,999	12,084	13,292	36,000~36,999	25,752	28,327
16,000~16,999	12,840	14,124	37,000~37,999	26,448	29,093
17,000~17,999	13,596	14,956	38,000~38,999	27,144	29,858
18,000~18,999	14,352	15,787	39,000~39,999	27,840	30,624
19,000~19,999	15,108	16,619	40,000~40,999	28,536	31,390
20,000~20,999	15,108	16,619	41,000~41,999	29,232	32,155
21,000~21,999	15,312	16,843	42,000~42,999	29,928	32,921
22,000~22,999	16,008	17,609	43,000~43,999	30,624	33,686
23,000~23,999	16,704	18,374			

5) 견인 자동차(road tractor)

최대허용 중량 3,500kg 초과 견인 자동차에 대한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견인 자동차의 세율

최대허용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최대허용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3,500~3,999	3,024	3,326	23,000~23,999	18,132	19,945
4,000~4,999	3,780	4,158	24,000~24,999	18,888	20,777
5,000~5,999	4,536	4,990	25,000~25,999	19,644	21,608
6,000~6,999	5,292	5,821	26,000~26,999	20,388	22,427
7,000~7,999	6,048	6,652	27,000~27,999	21,144	23,258
8,000~8,999	6,792	7,471	28,000~28,999	21,900	24,090
9,000~9,999	7,548	8,303	29,000~29,999	22,656	24,922
10,000~10,999	8,304	9,134	30,000~30,999	23,412	25,753
11,000~11,999	9,060	9,966	31,000~31,999	23,412	25,753
12,000~12,999	9,816	10,798	32,000~32,999	23,412	25,753
13,000~13,999	10,572	11,629	33,000~33,999	24,048	26,453
14,000~14,999	11,328	12,461	34,000~34,999	24,756	27,232
15,000~15,999	12,084	13,292	35,000~35,999	25,464	28,010
16,000~16,999	12,840	14,124	36,000~36,999	26,172	28,789
17,000~17,999	13,596	14,956	37,000~37,999	26,880	29,568
18,000~18,999	14,352	15,787	38,000~38,999	27,588	30,347
19,000~19,999	15,108	16,619	39,000~39,999	28,284	31,112
20,000~20,999	15,864	17,450	40,000~40,999	28,992	31,891
21,000~21,999	16,620	18,282	41,000~44,1999	29,700	32,670
22,000~22,999	17,376	19,114	42,000~42,999	30,408	33,449
			43,000~44,000	31,116	34,228

6)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semi- trailer)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도로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의 세율

최대허용 중량(kg)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500~3,999	2,004	2,204
4,000~17,999	3,000	3,300
18,000~44,000	3,996	4,396

7) 비과세

도로세의 비과세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자동차
- 앰블란스
- 장애인용 자동차
- 특정한 농업용 자동차
- 250cc 이하의 오토바이
- 수시로 사용되는 특정 자동차

2. 덴마크

1997년 7월1일 이후 신규등록한 모든 휘발유 및 경유 사용 승용차는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그린세(green owner's tax)를 내게된다. 자동차 제작자들은 EC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을 측정하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은 여러 가지 주행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되며, 처음 시동을 걸때부터 측정된다.

그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린세의 세율표(세액단위: DKK)

휘발유 사용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	
ℓ 당 주행거리(km)	반년분 세액	ℓ 당 주행거리(km)	반년분 세액
20km 이상	230	32.1km 이상	70
18.2 "	460	28.1 "	350
16.7 "	690	25.0 "	640
15.4 "	920	22.5 "	930
14.3 "	1,150	20.5 "	1,230
13.3 "	1,380	18.8 "	1,520
12.5 "	1,600	17.3 "	1,810
11.8 "	1,830	16.1 "	2,110
11.1 "	2,060	15.0 "	2,410
10.5 "	2,290	14.1 "	2,710
10.0 "	2,520	13.2 "	3,010
9.1 "	2,970	12.5 "	3,310
8.3 "	3,430	11.9 "	3,610
7.7 "	3,890	11.3 "	3,900
7.1 "	4,340	10.2 "	4,500
6.7 "	4,800	9.4 "	5,090
6.3 "	5,260	8.7 "	5,690
5.9 "	5,710	8.1 "	6,290
5.6 "	6,170	7.5 "	6,860
5.3 "	6,630	7.0 "	7,450
5.0 "	7,090	6.6 "	8,060
4.8 "	7,540	6.2 "	8,650
4.5 "	8,000	5.9 "	9,230
4.5 미만	8,460	5.6 "	9,850
		5.4 "	10,430
		5.1 "	11,080
		5.1 미만	11,670

그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와 상계세(countervailing tax)의 과세대상이 된다. 승용차는 차체중량(tare weight)에 따라 과세된다. 택시는 자동차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된다. 밴과 트럭은 최대허용 총중량(maximum permitted total weight)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소비세 및 상계세 세율표

차종별	자동차소비세 (반년분)	상계세(반년분)	
		자동차	트레일러
승용차(버스, 택시,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 차체중량 600kg 이하	780	460	
오토바이	530	310	
기타 승용차			
차체중량 601 ~ 800kg	960	580	
801 ~ 1,100	1,300	760	
1,101 ~ 1,300	1,720	970	
1,301 ~ 1,500	2,250	1,240	
1,501 ~ 2,000	3,100	1,650	
2,000kg초과(100kg당, 3월 마다)	88	47	19
2차축 이하 버스			
차체중량 1,300kg 이하	450	1,070	
1,301 ~ 1,500	585	1,100	
1,501 ~ 2,000	810	1,150	
2,001 ~ 3,000	900	1,150	
3,001 ~ 4,000	1,440	1,150	
4,001 ~ 5,000	1,920	1,150	
5,001 ~ 6,000	2,400	1,150	
6,001 ~ 7,000	3,120	1,150	
7,001 ~ 8,000	3,640	1,150	
8,001 ~ 9,000	4,160	1,150	
9,000kg초과(100kg당)	50	13	
3차축 이상버스(100kg당)	88	9	

차종별	상계세
경유사용택시 및 앰블런스	
차체중량 800kg 이하	1,440
801~1,100	1,780
1,101~1,300	2,120
1,301~1,500	2,320
1,501~2,000	2,550
2,000kg초과	3,040

도로사용료(road use charge)가 부과되지 않는 허용총중량이 4,000kg 이하인 '98년 7월2일 이후 신규등록한 밴과 트럭에 대해서는 자동차소비세와 상계세 외에도 이를 私用 또는 일부 私用(mixed private use)하는 때에는 부가세(surcharge)가 과세된다.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세는 사용의 반액이다.

밴 및 트럭에 대한 세율표

허용총중량	자동차소비세		상계세		부가세 (사용)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500kg 이하	780	-	340	-	830
501~1,000	1,000	120	490	-	830
1,001~2,000	1,660	230	670	-	830
2,001~2,500	2,870	310	850	-	4,620
2,501~3,000	3,440	380	960	-	4,620
3,001~4,000	3,440	460	1,100	160	4,620

환경친화적인 밴 등에 대한 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2000년 기준		2005년 기준	
1000kg 이하	350	1000kg 이하	450
1,001~2,000	700	1,001~2,000	900
2,001~2,500	900	2,001~2,500	1,250
2,501~3,500	1,150	2,501~3,500	1,600

허용총중량이 4,000kg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트레일러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총허용 중량	자동차소비세(연간)		상계세(연간)	
	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트레일러
2차축 이하				
4,000~5,000	2,052	552	1100	200
5,001~6,000	2,052	672	1100	250
6,001~7,000	2,052	825	100	300
7,001~8,000	2,052	988	1,100	400
8,001~9,000	2,052	1,161	1,100	450
9,001~10,000	2,052	1,344	1,100	550
10,001~11,000	2,279	1,537	1,100	650
11,001~12,000	2,610	1,740	1,100	750
12,001~13,000	3,087	1,953	1,100	850
13,001~14,000	3,604	2,176	1,100	1,000
14,001~15,000	4,161	2,628	1,100	1,100
15,000kg 초과(매200kg당)	60	40	16	16
3차축 이상				
총중량 1,800kg 이하	32	20	11	12
1,001~2,000	3,069	1,953	1,100	1,100
2,001~2,500	3,332	2,136	1,200	1,200
2,501~3,500(매200kg당)	36	24	13	13

도로사용료가 부과되는 트럭에 대한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총허용 중량	공기현가(pneumatic suspension) 트럭	기타 현가 트럭
2차축		
12,999kg 이하	-	226
13,000~13,999	226	627
14,000~14,999	627	882
15,000kg 이상	882	2,050
3차축		
16,999kg 이하	226	394
17,000~18,999	394	809
19,000~20,999	809	1,050
21,000~22,999	1,050	1,661
23,000kg 이상	1,661	2,582
4차축 이상		
24,999kg 이하	1,050	1,065
25,000~25,999	1,065	1,706
26,000~28,999	1,706	2,709
29,000kg 이상	2,709	4,019
트레일러 및 semi-trailer		
1) 1차축		
15,999kg 이하	-	-
16,000~17,999	-	102
18,000~19,999	102	233
20,000~21,999	233	547
22,000~22,999	547	707
23,000~24,999	707	1,276
25,000kg 이상	1,276	2,297
2) 2차축		
24,999kg 이하	219	510
25,000~25,999	510	839
26,000~27,999	839	1,232
28,000~28,999	1232	1,526
29,000~30,999	1526	2,507
31,000~32,999	2507	3,480
33,000kg 이상	3480	5,284
3) 3차축 이상		
37,999kg 이하	2769	3,854
38,000kg 이상	3854	5, 239

3. 독일

독일의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한다. 자가용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 및 버스는 총중량, 영업용 차량도 총중량에 따라 과세한다. 독일의 차종별 자동차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차

2륜차에 대한 세율은 배기량 25㎤당 연간 3.60 마르크(DM)이다

2) 자가용승용차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표준세율(휘발유차 100cc당 21.60DM, 경유차 100cc당 37.10DM)은 1997.7.1부터 EU대기오염배출기준 (EU emission standards)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율(100cc당 DM)

배출량 기준	최초등록일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
EURO 3, EURO 4	1997.6.30 이전	13.20	37.10
	1990.7.1 이후	10.00	27.00
	2004.1.1 이후	13.20	30.20
EURO 2	1997.6.30 이전	13.20	37.10
	1990.7.1 이후	12.00	29.00
	2004.1.1 이후	14.40	31.40
EURO 1	2000.12.31 이전	13.20	37.10
	2001.1.1 이후	21.20	45.10
	2005.1.1 이후	29.60	53.50
오존경보시 운행가능 非低公害 자동차	2000.12.31 이전	21.60	45.50
	2001.1.1 이후	29.60	53.50
	2005.1.1 이후	41.20	65.10

배출량 기준	최초등록일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
오존경보시 운행불가 저공해 자동차	1997.6.30 이전	13.20	37.10
	1997.7.1 이후	33.20	57.10
	2001.1.1 이후	41.20	65.10
	2005.1.1 이후	49.60	73.50
기타 자동차	1997.6.30이전	18.80/21.60	42.70/45.50
	1997.7.1 이후	41.60	65.50
	2001.1.1 이후	49.60	73.50

2000년 1월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액의 자동차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배출기준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EURO 3	250 DM	500 DM
EURO 4	600	1,200

2000년 1월1일 이전에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연료 소비량이 아주 적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일정액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km당 CO² 배출량이 120g 이하인 자동차 : 500 DM
- km당 CO² 배출량이 90g 이하인 자동차 : 1,000 DM

3) 기타 자동차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허용총중량(permissible total weight)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며 허용총중량이 3,500kg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오염배출기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허용총중량 3,500kg 이하 자동차
 - 2,000kg 미만 : 22.00 DM
 - 2,000kg ~ 3,000kg : 23.50
 - 3,000kg ~ 3,500kg : 25.00

② 허용총중량 3,500kg 초과 자동차

허용총중량 3,500kg 초과 자동차는 오염기준(pollution category)과 소음기준(noise category)를 고려하여 매200kg당 세율을 정해두고 있다. 차종별로 상한세액을 정하여 산출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오염기준 s2 해당 자동차>

허용총중량	200kg당 세율(DM)
2,000kg 이하	12.55
2,000~3,000	13.45
3,000~4,000	14.30
4,000~5,000	15.15
5,000~6,000	16.00
6,000~7,000	16.85
7,000~8,000	18.30
8,000~9,000	19.70
9,000~10,000	21.45
10,000~11,000	23.15
11,000~12,000	25.45
12,000~13,000	28.00
13,000kg 초과	30.85

※ 상한세율은 1,300 DM

<오염기준 S1 해당 자동차>

허용총중량	200kg당 세율(DM)
2,000kg 이하	12.55
2,000~3,000	13.45
3,000~4,000	14.30
4,000~5,000	15.15
5,000~6,000	16.00
6,000~7,000	16.85
7,000~8,000	18.30

허용총중량	200kg당 세율(DM)
8,000~9,000	19.70
9,000~10,000	21.45
10,000~11,000	23.15
11,000~12,000	25.45
12,000~13,000	28.00
13,000~14,000	30.85
14,000~15,000	50.85
15,000kg 초과	70.85

※ 상한세율은 2,000 DM

<소음기준 G1 해당 자동차>

허용총중량	200kg당 세율(DM)
2,000kg 이하	18.85
2,000~3,000	20.15
3,000~4,000	21.45
4,000~5,000	22.70
5,000~6,000	24.00
6,000~7,000	25.30
7,000~8,000	27.45
8,000~9,000	29.55
9,000~10,000	32.15
10,000~11,000	34.70
11,000~12,000	38.15
12,000~13,000	42.00
13,000~14,000	46.30
14,000~15,000	76.30
15,000kg 초과	106.30

※ 상한세율은 3,000 DM

<기타 자동차>

허용총중량	200kg당 세율(DM)
2,000kg 이하	22.00
2,000~3,~000	23.50
3,000~4,000	25.00
4,000~5,000	26.50
5,000~6,000	28.00
6,000~7,000	29.50
7,000~8,000	32.00
8,000~9,000	34.50
9,000~10,000	37.50
10,000~11,000	40.50
11,000~12,000	44.50
12,000~13,000	49.00
13,000~14,000	54.00
14,000~15,000	89.00
15,000kg 초과	124.00

※ 상한세율은 3,500 DM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surcharge)이 부가된다. 다만, 세미트레일러가 철도와 연결된 화물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은 면제된다.

- 총허용중량 10톤 이하 : 730 DM
- 10 ~ 12톤 : 876
- 12 ~ 14톤 : 1,022
- 14 ~ 16톤 : 1,168
- 16 ~ 18톤 : 1,314
- 18톤 초과 : 1,750

4.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자동차세(vehicle duty)는 자가용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승합차나 버스는 좌석수, 상업용자동차는 차중(deadweight)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가용승용차

배기량(cc)	연간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분기세액(파운드)
1,000cc 이하	98	55	28
1,001~1,100	146	82	42
1,101~1,200	160	90	46
1,201~1,300	173	97	50
1,301~1,400	186	105	54
1,401~1,500	200	112	57
1,501~1,600	247	139	71
1,601~1,700	262	147	75
1,701~1,800	306	172	88
1,801~1,900	323	181	93
1,901~2,000	340	191	97
2,001~2,100	435	244	124
2,101~2,200	456	256	130
2,201~2,300	477	268	136
2,301~2,400	497	279	142
2,401~2,500	518	291	148
2,501~2,600	607	340	173
2,601~2,700	631	354	180
2,701~2,800	654	367	187
2,801~2,900	677	380	193
2,901~3,000	701	393	200
3,001 이상	849	476	242
전기자동차	98	55	28

2) 화물자동차

차중(kg)	연간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분기세액(파운드)
3,000kg 이하	160	90	46
3,001~4,000	202	114	58
4,001~5,000	261	147	75
5,001~6,000	362	203	104
6,001~7,000	489	274	140
7,001~8,000	616	345	176
8,001~9,000	761	427	217
9,001~10,000	906	508	259
10,001~11,000	1,051	589	300
11,001~12,000	1,196	670	341
12,001~13,000	1,341	751	383
13,001~14,000	1,486	833	424
14,001~20,000	1,486+1,000kg당145파운드	연세액의 56%	연세액의 28%
20,001 이상	2,494	1,397	711
전기자동차	54	-	-

3) 승합차 및 버스

좌석수	연간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분기세액(파운드)
9~20	78	-	-
21~40	103	58	30
41~60	206	116	59
61 이상	206	116	59

4) 기타 자동차

차종별	연간세액(파운드)	반년세액(파운드)	분기세액(파운드)
도로 비주행 덤퍼	425	238	122
일반 견인 트랙터	128	72	37
농업용 트랙터 및 굴삭기	49	-	-
택시, 전세 자동차, 장의차(hearse)	49	-	-
스쿨 버스	49	-	-
덤퍼(dumper) 및 지게차,	49	-	-
삼륜오토바이	22	-	-
오토바이	12	-	-
트레일러	25	-	-

5. 그리스

그리스의 자동차세는 자가용승용차는 배기량과 마력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승합차와 버스는 좌석수, 트럭은 수익하중(payload)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연간 2회에 걸쳐 과세되며, 차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가용승용차

배기량(cc)	마력	연간세액(Dr)
1,357 이하	9 이하	25,000
1,357~1,928	10~13	45,000
1,929~2,357	14~16	100,000
2,357 초과	17 이상	130,000

2) 영업용 트럭

- 私用 : 수익하중 kg당 16 Dr
- 公用 : 수익하중 kg당 5 Dr

3) 영업용 버스

좌석당 1,250 Dr

6. 프랑스

1) 도로세

차축세(6-2 참조)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차 및 영업용 자동차는 엔진의 출력(CV)에 따라 누진세율로 도로세를 과세한다. 버스 등 승합차도 엔진 출력에 따라 과세한다. 엔진 출력단위 CV는 1마력에 해당된다. 세액은 자동차의 출력, 차령 및 등록지(과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차령의 구분은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5년 이상 자동차는 5년 미만의 자동차의 50%의 세액으로 과세된다. 차령 20년 이상 26년 미만 자동차는 일괄하여 기본세액(차령 5년 미만의 4CV 이하 자동차의 세액)에 0.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된다. 영업용 자동차의 도로세 상한(upper limit)은 17CV이다. 각 지방자치단체(département)가 과세하는 도로세의 차령별, 엔진 출력(CV)별 세액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도로세의 세율표 (단위: 프랑)

세율범위	차령 5년 미만 자동차									
	4CV이하	7CV이하	9CV이하	11CV이하	14CV이하	16CV이하	18CV이하	20CV이하	22CV이하	23CV이상
최저	146	278	660	814	1,444	1,766	2,166	3,240	4,868	7,310
최고	314	616	1,456	1,712	3,032	3,706	4,556	6,800	10,216	15,340

차령 5년 이상 20년미만 자동차										20년 이상 26년 미만
4CV이하	7CV이하	9CV이하	11CV이하	14CV이하	16CV이하	18CV이하	20CV이하	22CV이하	23CV이상	
73	139	330	407	722	883	1,083	1,620	2,434	3,655	62
157	308	728	856	1,516	1,853	2,278	3,400	5,108	7,670	126

회사6800 소유의 승용차는 6CV 이하는 연세액 7,400프랑, 기타 자동차는 연10216세액 16,000프랑이다. 회사 소유 CNG, LPG 및 전기 자동차는 50% 15340감면율이 적용된다.

2) 차축세

차축세는 교통 인프라스트락쳐와 관련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최대허용중량이 12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이다. 차축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도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축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차축세의 세율

차종별	최대허용중량(톤)	분기세액(프랑)	
		현가식 또는 축현가	기타
자동차			
1) 2차축	12톤 이상~18톤 미만	450	650
	18톤 이상	600	900
2) 3차축	12톤 이상	450	650
3) 4차축	12톤 이상~27톤 미만	450	650
	27톤 이상	600	890
트레일러 트럭			
1) 1차축 세미 트레일러	12톤 이상 ~ 20톤 미만	620	860
	20톤 이상 ~ 27톤 미만	950	1,160
	27톤 이상	1,450	1,650
2) 2차축 세미 트레일러	12톤 이상 ~ 27톤 미만	620	860
	27톤 이상 ~ 33톤 미만	770	1,070
	33톤 이상 ~ 39톤 미만	950	1,270
	39톤 이상	1,040	1,540
3) 3차축 세미 트레일러	12톤 이상 ~ 27톤 미만	620	860
	27톤 이상 ~ 38톤 미만	770	1,070
	38톤 이상	860	1,160
트레일러	16톤		450

차종별		과세기준	최저표준세액(페스타)	실제 과세액(페스타)
상업용 자동차	전인차	16마력 이하	2,940	4,145
		25마력 이하	4,620	6,510
		25마력 초과	13,860	19,530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999kg 이하	2,940	4,145
		2,999kg 이하	4,620	6,510
		3,000kg 이상	13,860	19,530
오토바이		125cc 이하	735	1,035
		250cc 이하	1,260	1,775
		500cc 이하	2,520	3,550
		1,000cc 이하	5,040	6,095
		1,000cc 초과	10,080	14,200

8. 이탈리아

1) 과세기준

자가용 자동차 및 버스 등의 승합차는 엔진의 출력 kw(1kw는 1.36마력)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과세기준으로서 엔진 출력은 마력이었으나, EU표준에 따라 kw로 변경된 것이다. 엔진총허용중량이 12톤 이하인 화물차는 수익하중(payload)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총허용중량이 12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총허용중량과 차축의 수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등록이 된 자동차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후 5년간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2) 세율

○ 자가용 자동차 및 승합차

자가용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한 세율은 정액세액으로서 kw당 5,000리라로 과세한다. 과세기준이 되는 kw는 11~316kw까지로 나누어 55,000~1,580,000리라로 과세한다. 운전교습용

자동차, 앰블런스 등 특수용도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kw당 825리라의 세율이 적용된다.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디젤 자동차(non-ecological diesel engine cars)에 대해서는 kw당 10.145리라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 12톤 이하의 영업용 트럭 및 트레일러

12톤 이하의 트럭 및 트레일러는 수익하중(payload)을 기준으로 각각 18단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12톤 이하 영업용 트럭 및 트레일러 세율

수익하중	세액(리라)	수익하중	세액(리라)
4이하	44,000	4이하	49,000
8이하	62,000	8이하	68,000
10이하	80,000	10이하	87,000
15이하	106,000	15이하	117,000
20이하	150,000	20이하	164,000
25이하	194,000	25이하	212,000
30이하	239,000	30이하	262,000
35이하	283,000	35이하	311,000
40이하	327,000	40이하	359,000
45이하	371,000	45이하	406,000
50이하	415,000	50이하	456,000
60이하	460,000	60이하	505,000
70이하	513,000	70이하	584,000
80이하	566,000	80이하	619,000
90이하	636,000	90이하	698,000
100이하	725,000	100이하	795,000
110이하	813,000	110이하	884,000
119이하	928,000	119이하	1,007,000

○ 12톤 초과 영업용 트럭 세율

12톤 초과 영업용 트럭에 대한 세율은 차축, 현가식, 비현가식 등을 고려하여 정액세율로 정해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율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2톤 초과 영업용 트럭 세율

등급	2차축	3차축	4차축 이상	연간 세액(리라)		월 세액(리라)	
				현가식	비현가식	현가식	비현가식
1	12~14	15~18		319,000 ~ 530,000	393,000 ~ 662,000	27,405 ~ 45,133	34192 ~ 56873
2		19~20	23~24	356,000 ~ 592,000	444,000 ~ 740,000	30,584 ~ 50,859	38144 ~ 63574
3		21~22	25~26	392,000 ~ 653,000	490,000 ~ 816,000	33677 ~ 56100	42096 ~ 70103
4	15 이상			465,000 ~ 734,000	582,000 ~ 917,000	39948 ~ 63058	50000 ~ 78780
5		23 이상		586,000 ~ 836,000	733,000 ~ 1,044,000	50344 ~ 71821	62973 ~ 89691
6			27~28	614,000 ~ 939,000	768,000 ~ 1,172,000	52749 ~ 80670	65979 ~ 100687
7			29 이상	910,000 ~ 1,086,000	1,137,000 ~ 1,358,000	78179 ~ 93299	97680 ~ 116667